



# 5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서비스견 및 안내견 공공 시설물 접근 권리

- 1 뉴저지주 차별 금지법(LAD)은 서비스견이나 안내견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이 모든 공공 시설물을 완전히 평등하게 즐길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시설물에는 식당, 학교, 호텔 및 병원과 같은 공공 수용 시설뿐만 아니라 해변, 공원, 거리, 보도 및 공공건물과 같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모든 공간이 포함됩니다.
- 2 서비스견은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훈련된 모든 보조견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구에는 장애인 보호 또는 구조 임무, 휠체어를 끄는 임무, 간질이나 기타 발작 장애가 있는 개인을 보조하는 임무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안내견은 청각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을 보조하도록 훈련된 보조견을 의미합니다.
- 3 LAD에 따라, 장애인은 인정된 훈련 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서비스견이나 안내견을 모든 공공 시설물에 동반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 시설에서는 그러한 개인의 입장을 허용하기 전에 훈련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보조견이 인정된 훈련 기관이 아닌 곳에서 훈련을 받았다면(예를 들어, 그러한 보조견이 소유주로부터 훈련되었다면), LAD가 아닌 미국 장애인법(ADA)이 적용되며 공공 시설물에서는 개인에게 그러한 보조견이 특정한 장애 보조를 위해 필요한지와 해당 보조견이 수행하도록 훈련된 임무는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 4 공공 시설에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견이나 안내견에 대한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지만, 그러한 보조견이 기물을 손상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견이나 안내견을 사용하는 개인은 그러한 보조견을 항상 곁에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 5 공공 시설에서는 LAD 위반을 신고하였거나 LAD에 따라 보장된 기타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 데 대하여 장애인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NJCivilRights.gov](http://NJCivilRights.gov)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1.833.NJDCR4U로 연락해주시십시오



NJ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NJCivilRights.gov](http://NJCivilRights.gov)

**NJ** DIVISION ON  
**CIVIL RIGHTS**  
 @CivilRightsNJ #CivilRightsNJ #StandUpAgainstHate

